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2 선고 2021가단50523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6. 17.

판 결 선 고 2021. 7. 22.

## 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9,999,033원 및 그 중 19,777,869원에 대하여 2020. 10. 28.부터 2021. 6. 11.까지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10. 체결된 매매계약을 21,274,5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B은 원고에게 21,274,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[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로 '19,999,033원 및 그 중 19,777,869원에 대하여 2020. 10. 28.부터 2021. 6. 11.까지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2021. 6. 17.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'을 구하고 있으므로, 계산상 21,274,569원{19,999,033원 + 1,230,020원(19,777,869원 × 227일/365일 × 10%) + 45,516원(19,777,869원 × 7일/365일 × 12%)}으로 특정한다].

## 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B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박희근

별지